

두산건설 주식회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두산건설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Doosan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토목, 건축 등의 일반공사 및 철강재설치공사업, 항만건설, 도로건설, 포장, 삭도설치, 조경 등의 특수공사 수급 설계, 시공 및 감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2. 전기, 정보통신(선로, 기계, 전송)공사업, 특정연료사용 기자재시공업, 소방설비 및 기타 제건설공사 수급 설계, 시공 및 감리업
3.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 및 최종 처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4. 기계설계제작 및 기계설치시공 감독
5. 전문기술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산업설비용역업
6.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조경업 등)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7.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업
8. 해외종합건설업
9. 수출입업
10. 국내외업체에의 투자
11. 군납업
12. 시장 및 유통에 관한 사업
13. 골프장 및 부대시설 운영업
14. 관광숙박업 및 운영업
15. 관광객 이용시설 및 운영업
16. 주택건설업 등 주택사업
17. 목철재 제조업
18. 주차장 운영업
19. 공유수면 매립사업
20. 가스시설시공업
21. PLANT 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22. COMPUTER SOFTWARE 개발업
23. 전력 및 열공급사업
24. 공동주택 시설관리업
25. 시공감리전문업, 전면 책임감리전문업
26. 일반측량업
2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28. 폐기물처리시설(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운영업
29. 종말처리장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업
30.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업

31. 집단에너지 시설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업
32. 재활용시설 운영업
33. 도시계획사업
34. 도심지 재개발사업
35. 관광단지 개발사업
36. 화물터미널사업
37. 항만운송사업
38. 연수 및 교육 시설업
39.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관련사업
40. 건설사업관리업(CM업)
41. 리모델링 사업
42. 산업, 환경설비 공사업
43. 창호공사업 및 해외건설 창호공사업
44. 기타 남북경제협력사업
45.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
46. 부동산 관리업
47. 부동산 개발업
48. 레저산업(마리나,눈썰매,미니골프장 위탁운영업)
49. 주택 분양 및 매매업
50. 주택조성 분양업
51. 관광호텔 및 호텔경영업
52. 관광기념판매업 및 외식판매
53.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관리 운영업 (위탁운영업)
54.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55. 신재생에너지 사업
56. 토양정화업, 지하수정화업
57. 화학기계 제작 및 설치
58. 화학공업플랜트의 제작 및 설치
59. 보일러 제작
60. 철구물 제작
61. 금속구조창호공사업
62. 공장자동화시설 및 전장품 제작 설치
63. 식품기계 제작 및 설치
64. 운반하조기계 제작 및 설치
65. 기계기구설치공사
66. 선박구성부분품의 제조
67. 환경오염방지시설,수처리시설 제작 및 설치
68. 발전설비 제작 및 설치
69. 기계설비공사업
70. 토공사업
71. 발전설비, 제철, 제강설비, 시멘트 제조설비, 석유화학설비, 해양설비, 담수설비, 기타

- 산업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
72. 철강재 및 철강구조물 제작, 설치공사업
 73. 전력설비의 설치 및 개보수
 74. 콘크리트 제품제조 및 판매업
 75.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76. 일반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77. 기타 서비스업
 78. 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위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osanenc.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金500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 (배당우선주식)

-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우선주식의 배당율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年 1%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전환주식)

-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상환주식)

-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1.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④ 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⑥ 제8조의 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권배제주식)

-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주식의 소각)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당해 사업연도 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이어야 한다)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3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14조(주금 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식인수인은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15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다만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주식과 주식배정의 경우에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기술도입 내지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4) 자산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신주 발행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 까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6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이 회사의 경영,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10년 내에서 부여 시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단,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행사가능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정년을 제외한다)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20조(사채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거래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전환가액(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은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거래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은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24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8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5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26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유고시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는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제28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제29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유고시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2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3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조 이사, 이사회

제37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38조 (이사의 선임)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는 본문의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제40조 (이사의 해임과 결원)

-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 ②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 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 2)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4) 사망 시

제41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②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인 또는 이사 아닌 회장, 부회장, 사장을 선임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의 선임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 (이사의 임무 등)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 ②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44조 (이사회 의 구성과 권한)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 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5조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이사회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의장 유고시 제4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 (의안)

이사회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청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8조 (이사의 보수)

- ① 이사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등)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이사회는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49조 (이사의 책임)

- ①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이사가 이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0조 (고문 등)

- ① 대표이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고문 및 자문역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감사

제51조 (감사의 수와 선임)

-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53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5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55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6조 (감사의 보수)

감사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 등)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

제57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이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6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제9조 전환주식, 제10조 상환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1조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 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62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①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보칙

제63조 (규칙)

이사회는 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64조 (적용 규정)

- ①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 이 정관에 인용한 법령이 개정된 때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3.1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3.1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2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3.2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3.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0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